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. 8. 26 선고 2021가단21091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

대한민국

피 고

AAA

변 론 종 결

무변론

판 결 선 고

2021. 8. 26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 - 가. AAA과 피고 사이에 2019. 12. 3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 - 나. 피고는 AAA에게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9. 12. 11. 접수 제205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